

Q 회사에서 개발해 보유중인 게임 프로그램의 실질적 재산권 보유관계와 소스 보호 방안은?

회사를 통해 개발된 컴퓨터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의 경우 실질적 재산권을 누가 보유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다. 프로그램의 저작권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하 '프로그램보호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당해 프로그램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프로그램의 지적재산권은 개발자에게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보호법 제5조는 '국가·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은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법인 등을 당해 프로그램의 저작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업무상 창작의 경우에 고용관계의 범위 안에서 종업원이 사용자의 지시와 비용으로 창작한 노력의 결과는 사용자가 취득할 권리가 있다는 것으로서 프로그램보호법 제2조 제2호의 원칙에 대한 중요한 예외 규정이다. 업체가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창작할 것 △법인의 기획 하에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일 것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에 다르게 정함이 없을 것 등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 소유권은 회사에 귀속”

Q 모 업체에서 근무하던 기술자가 퇴직하여 동종 업체로 재취업을 하는 경우 기존 업체의 기술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기술자가 다른 회사에 취업해 이전 회사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할 것을 대비해 프로그램심의조정 위원회에 프로그램 저작권을 등록하는 것이 좋다. 일단 등록이 되면 추후에 타사가 자사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할 때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하는 데 용이하다. 특히 기술자가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이전 회사의 기술을 침해할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 비밀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밖에 기술자가 다른 업체에 취업할 때 기존에 개발한 프로그램에 대한 기술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교부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Q 근무 중인 병역특례요원이 특례기간 중 다른 회사로 이직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은?

이 질문은 프로그램 개발 단계에서 이직을 하는 경우 기 개발한 프로그램 등을 이직한 회사에서 활용하는 경우에 대응하는 방법을 묻는 것이다. 병역특례요원들이 전직을 하는 경우는 병역법 시행령 제 85조 규정에 의거 의무전직, 승인전직이 있다. 이 사안의 경우 승인전직으로 보이는 바,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1년이 경과한 때 관할 지방 병무청장의 승인을 얻으면 지정업체를 옮길 수 있다. 사실상 해당 인력의 이직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월간 <디지털콘텐츠>는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KIBA)와 공동으로 건강한 DC 유통 환경 조성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그 일환으로 기업들이 경영일선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저작권 관련 사례들을 Q&A 형식으로 게재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그 첫 회로 게임 프로그램의 실질적 재산권 보유관계와 개발인력의 잦은 이직 등에 따른 콘텐츠 유출 대응방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편집자 주